



문서번호	맑은환경과-5910
결재일자	2016.3.10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주무관	대기관리팀장	맑은환경과장	주민생활국장	
이종원	유재영	이래현	03/10 소판수	
협조	주거정비과장 소순면			

2016년도 성동구 석면안전관리 계획



성 동 구

(맑은환경과)

사 전 검 토 사 항

∴ 해당사항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항 목	검 토 여 부
사 업 구 분	신규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약(약속)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계속사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인센티브/공모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
소 통 분 야 고 려 사 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구 민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● 전 문 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● 이해당사자 : 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(슬레이트 지붕 주택 소유주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여 성 친 화 도 시	성 평 등 <input type="checkbox"/> 안 전·편 의 <input type="checkbox"/> 가 족·공 동 체 회 복 <input type="checkbox"/> 여 성 참 여 <input type="checkbox"/>
기 타 고 려 사 항	일 자 리 <input type="checkbox"/> 환 경 영 향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안 전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유 지 비 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바 른 공 공 언 어 <input type="checkbox"/> 성 인 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취 약 계 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장 애 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디 자 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갈 등 발 생 요 인 <input type="checkbox"/>
타 자원 활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중 앙 부 처 : 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(환경부(한국환경공단)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● 서 울 시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● 기 업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● 민 간 단 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언 론 홍 보 계 획	기 획 보 도 <input type="checkbox"/> 보 도 자 료 <input type="checkbox"/> S D T V <input type="checkbox"/> 성 동 뉴 스 레 터 <input type="checkbox"/> 성 동 구 소 식 지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기 고 문 <input type="checkbox"/> 전 자 행 정 서 비 스 <input type="checkbox"/> S N S <input type="checkbox"/> 기 타 (리 플 랫 등) <input type="checkbox"/> 없 음 <input type="checkbox"/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홍 보 제 목 :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 ● 중점 홍보사항 - - <p>※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'홍보제목'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</p>	

2016년도 성동구 석면 안전관리 계획

1급 발암물질인 석면 안전관리를 효율적·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주민건강 및 환경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I 관련근거

- 석면안전관리법(석면건축물 및 석면처리의 안전관리)
- 석면피해구제법(석면피해자 구제급여 지급)
- 2016 석면 안전관리 및 조치계획(서울시, 2016. 2. 23.)

II 현 황

- 석면사용실태 및 경과
 - 섬유상 광물인 석면은 내열성, 내마모성이 뛰어나 약 40년간(1970~2007년) 건축자재, 자동차부품 등에 널리 사용됨
 -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폐, 흉막, 복막 질환을 유발하는데, 잠복기(15~40년)를 지난 후 이러한 석면질환 문제가 대두되어 2009년부터 석면사용 엄격히 제한
 - 석면피해자 구제와 이미 사용된 석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2010년 석면피해구제법,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제정·시행

□ 주요 석면 제품

			
배관용 개스킷	슬레이트 지붕	천장 텍스타일	칸막이용 밤라이트

□ 석면안전관리법 주요 내용

- 석면의 제조·수입·양도·제공 또는 사용 금지
- 일정규모 이상 다중이용시설 등의 마감재 석면함유여부 조사 의무화
- 법 제정 이전 사용된 석면의 안전관리를 위해 석면건축물¹⁾ 소유주·관리자에게 석면관리의무 부과
- 일정규모이상 석면 해체·제거 시 작업 중 석면비산 방지를 위해 석면비산농도 측정 및 석면안전 감리인 선임 의무화

□ 추진방향

- 석면건축물의 소유주·관리자의 석면 안전관리 이행현황 점검
- 석면 해체·제거 공사 중 석면 비산 차단
- 석면 슬레이트 주택 지붕 교체 지원
- 석면피해자에게 요양급여, 유족조위금 등 구제급여 지급

1) 석면건축물: 다중이용시설이나 공공기관 소유 건축물 등 관련법에서 정한 건축물 내 석면조사결과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의 면적이 50m² 이상인 건축물

Ⅲ

추진실적 및 개선방향

□ 2015년도 추진실적

○ 건축물 석면조사 및 석면건축물 점검

- 조사결과: 전체 312개소 조사결과 109개소 석면건축물 지정
- 점검실적: 석면건축물 68개소 점검('16. 6월까지 전수점검 완료)

○ 대규모 석면해체제거 공사장 석면안전관리

- 대 상: 금호 15, 금호 20, 행당 6구역
- 내 용: 철거현장 점검, 석면주민감시단 운영·지원, 철거작업 중 석면비산측정 실시(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의뢰)

○ 그 외 추진실적

-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급: 2명
- 석면 슬레이트 주택지붕 교체지원: 2동
- 석면관련 행정처분: 2건(과태료 2,280천원 부과)

□ 문제점 및 개선방향

○ 문제점

- 2012년 법 시행되고, 2015년 석면조사가 완료되어 석면건축물 소유자 등의 석면안전관리의 중요성 및 필요성 인식이 미흡
- 주택 슬레이트 지붕교체 계획 대비 실적 미달(계획 5동, 실적 2동)

○ 개선방향

- 전수점검으로 안전관리 방안 및 중요성 등 현장면담 안내 실시
- 신청주택 뿐만 아니라 슬레이트 지붕이 많은 사근·마장동 현장 조사하여 실제 지원가능한 주택을 발굴하여 5동 교체

IV

추진계획

1 석면건축물 안전관리

○ 대상: 법정지정건축물²⁾ 중 석면조사결과 건축물 내 석면건축자재가 50m² 이상인 건축물

○ 우리구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(2016. 3. 4. 기준)

	계	석면건축물			비석면건축물		
		소계	공공	민간	소계	공공	민간
개소수 (개소)	312	109	55	54	203	108	95

※상세내역 붙임1

○ 석면건축물 소유자 등의 안전관리 이행사항

- 석면조사결과서, 석면지도,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등 보존
- 석면 안전관리인 선임하여 석면건축자재 파손확인 및 비산 방지
- 6개월마다 석면건축자재의 이상여부를 기록하는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보존

○ 추진계획

- 석면지도 등 보존, 안전관리인 근무 여부 전수점검 실시(~6월)
(점검완료: 68개소, 점검예정: 41개소)
- 주민 이용이 많은 시설의 석면건축자재 파손·보완 여부 현장 점검
(10~12월)

2) 지정건축물

- 가) 연면적 500m² 이상 공공건물, 의료시설, 문화·집회시설, 노유자 시설 등
- 나) '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'에 따른 다중이용시설
(대규모점포, 종합병원, 실내주차장 등)

2 석면 해체·제거 공사장 관리

○ 관리현황

관련기관	고용노동청	맑은환경과	청소행정과
관리내용	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전 신고 (석면면적 50m ² 이상)	석면작업 중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보고서 제출 (석면면적 500m ² 이상)	폐석면 폐기물 처리 신고
		석면작업 감리인 선임 신고 (석면면적 800m ² 이상)	
		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석면비산측정 의뢰 (석면면적 5,000m ² 이상 또는 재개발·재건축 사업장)	

○ 관리계획

- 구 홈페이지에 공사장 별 작업일정, 석면비산정도 측정 결과 등 공개
- 고용노동청 신고기록 조회하여 철거공사장 신고 이행 여부 확인
- 석면면적 2,000m² 이상 대규모 공사장의 감리원 상주여부 및 규정에 따른 작업수행 여부 점검 실시

○ 석면관리 주민감시단 운영

- 목 적: 대규모 석면 작업이 이루어지는 재개발·재건축 사업장 인근 주민으로 감시단을 구성·운영하여, 주민 참여를 통한 투명한 석면 안전관리 체계 마련
- 운영시기: 재개발·재건축 철거 공사 전 ~ 석면철거 완료 시 까지
- 구 성: 석면 또는 환경단체 전문가, 사업장 인근 주민 등
- 활동방법: 석면 해체·제거작업 중 현장방문하여 처리상태 확인

3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

○ 대 상: 국내에서 석면으로 인한 폐, 복막 등 질환 피해를 입은 자나, 그 피해자의 유가족

○ 지원내용

- 석면질환자: 석면피해구제급여(매월) 지급
- 석면질환자 유족: 장의비 및 유족조의금 지급

※발생 질환병 지급금액 붙임2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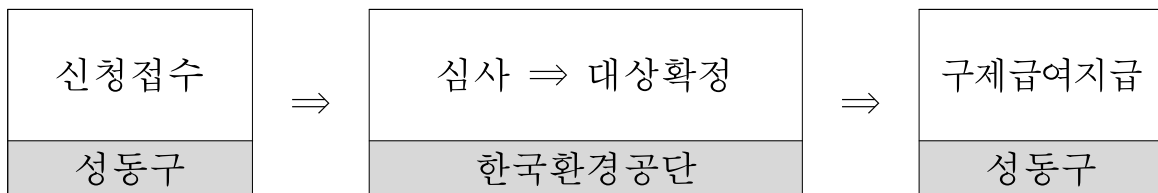
○ 재 원: 석면피해구제기금 90%, 시비 7%, 구비 3%

○ 우리구 지급대상: 2명

질환별 구분	월 지급금액	지급기간
원발성 폐암 1명	1,314,130원	2013. 9. ~ 2018. 8.(5년)
석면폐증(3급) 1명	315,390원	2015. 7. ~ 2017. 6.(2년)

※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장례비, 조위금 지급

○ 석면피해구제 대상자 선정 절차



○ 추진내용

- 석면피해구제 급여 매월 신청(한국환경공단) 및 지급
- 석면피해자 의심자(폐 질환자 4명)에 지원 내용 안내(3~4월)
- 석면피해 구제급여 제도 홍보(구 홈페이지, 소식지 등)

4 석면 슬레이트 주택 지붕 교체

- 대상: 석면 슬레이트 지붕으로된 주택
※단, 무허가 및 재개발·재건축 지구 내 주택 제외

- 지원내역: 지붕 철거 및 개량 대행비용 가구당 최고 500만원 지원
(공사 대행사는 한국환경공단 선정 업체)



○ 연차별 추진실적 및 계획

구 분	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
동수	15	1	2	5	2	5(계획)

○ 추진체계

서울시	우리구	한국환경공단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사업비 확보, 배정 ○사업실적 총괄관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사업홍보, 신청접수 ○한국환경공단에 사업비 교부 ○서울시로 결산보고(12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교체공사 업무 위탁대행 (시공사 선정 및 관리) ○공사결과 점검, 민원처리

○ 일정별 추진계획

- 2016. 3월 한국환경공단과 철거·개량 업무 위탁 협약
- 2016. 4월 ~ 10월 대상자 발굴 및 교체공사(수시)
- 2016. 12월 사업정산 보고(시로 제출)

V**행 정 사 항** **소요예산: 42,855천원** **주택 슬레이트 교체 사업: 23,800천원**

- 4,760천원 × 5동 = 23,800천원(국 8,400천원, 시 15,400천원)

 석면피해구제급여: 18,555천원

- 1,466,580원 × 12월 = 18,554,240원

(국 17,598,960원, 시 1,368,840원, 구 586,440원)

 주민 석면감시단 운영: 500천원

- 20천원 × 5인 × 5회 = 500천원(구비)

 협조사항 **주거정비과: 재개발·재건축 철거 공사 전 주민감시단 구성·운영**

붙임 1. 성동구 건축물 석면조사 내역 1부

2. 2016년도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금액 기준 1부. 끝.